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문제편 241~해설편 388p 번호 : 15	문제-보기(지문)	[문제편 241p & 해설편 388p] 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에 해당하는 자는? ①~②, ④~⑤ 변경 없음 ③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문제편 241p & 해설편 388p] 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에 해당하는 자는? ①~②, ④~⑤ 변경 없음 ③ 택배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둘 이상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직원을 채용하여 배송업무를 하는 사람
		수정 사유	법령 개정으로 인한 수정
해설편 56~56p 번호 : 09	해설	09 근로기준법령상 구제명령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③, ⑤ 변경 없음 ④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노력하였으나 근로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것이 명백한 경우 노동위원회는 직권으로 그 사유가 없어진 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5일 이내의 기간을 납부기한으로 할 수 있다(근기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09 근로기준법령상 구제명령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③, ⑤ 변경 없음 ④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노력하였으나 근로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것이 명백한 경우 노동위원회는 직권으로 그 사유가 없어진 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노력하였으나 근로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그 사유가 없어진 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근기법 시행령 제14조 제1호).
해설편 238~238p 번호 : 20	해설	20 甲은 2020.2.1. 자기 소유 중고자동차를 1,000만원에 매수할 것을 乙에게 청약하는 내용의 편지를 발송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④ 변경 없음 ⑤ 乙이 위 청약을 승낙하는 편지를 2020.2.10. 발송하여 甲에게 2020.2.15. 도달하였다면 甲과 乙 간의 계약성립일은 2020.2.15.이다. 승낙의 효력발생시기와 관련하여, 승낙기간 내 승낙의 부도달을 해제조건으로 승낙통지 발송 시 계약이 성립한다는 해제조건설(다수설)에 의할 경우, 甲에게 2020.2.15. 승낙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였다면, 계약성립일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2020.2.10.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0 甲은 2020.2.1. 자기 소유 중고자동차를 1,000만원에 매수할 것을 乙에게 청약하는 내용의 편지를 발송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④ 변경 없음 ⑤ 乙이 위 청약을 승낙하는 편지를 2020.2.10. 발송하여 甲에게 2020.2.15. 도달하였다면 甲과 乙 간의 계약성립일은 2020.2.15.이다. 乙의 승낙의 의사표시인 편지가 甲에게 2020.2.15. 도달하였으므로, 승낙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어떠한 견해에 의하더라도, 민법 제531조에 의하여 乙이 편지를 발송한 2020.2.10에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이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해설편 309~309p 번호 : 25	해설	25 부당이득의 반환의무 또는 책임의 범위가 현존이익으로 한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③, ⑤ 변경 없음 ④ 수탁보증인이 과실 없이 변제 기타의 출제로 주채무를 소멸시킨 경우, 주채무자의 수탁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 주채무자의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제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민법 제444조 제1항).	25 부당이득의 반환의무 또는 책임의 범위가 현존이익으로 한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③, ⑤ 변경 없음 ④ 수탁보증인이 과실 없이 변제 기타의 출제로 주채무를 소멸시킨 경우, 주채무자의 수탁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 없이 변제 기타의 출제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민법 제444조 제1항). 제425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민법 제441조 제2항). 연대채무자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 한다(민법 제425조 제2항).
해설편 403~403p 번호 : 15	해설	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등과 관련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변경 없음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산재법 제5조 제2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산재법 제5조 제3항 제1호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산재법 제5조 제3항 제2호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산재법 제5조 제3항 제4호	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등과 관련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변경 없음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산재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산재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1호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산재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2호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산재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4호

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